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6,495,028	8,894,851
일반회계	278,566,096	8,356,983
특별회계	17,928,932	537,868
기타특별회계	17,928,932	537,86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83,381	98,501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721,481	21,644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345,427	10,363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590,000	17,7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20,353	39,611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069,919	152,09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2,617,618	78,529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037,310	31,119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2,933,312	87,999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0,131	304

제 2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13,45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